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

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규정된 내과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내과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,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산하 분과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, 지도,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 조 (위원장 및 간사)

1.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,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2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,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.

제 4 조 (회의)

1.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2.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5 조 (행정요원)

1.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.
2. 행정요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1) 본 규정은 1998년 2월 25일 개정되었다.